조사직직원관리규정

제정 2002. 7. 29 규정 제407호 개정 2010. 6. 1 규정 제655호 2015. 3. 31 규정 제766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인력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조사직 직원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단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인사

제3조(임용)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한다.

- **제4조(직급구분 등)** ①조사직 직원의 직급은 1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직명은 인사규정상의 직명을 따른다.(개정 2010.6.1, 2015.3.31)
 - ②조사직 직원의 직렬, 직종은 조사로 한다.(개정 2010.6.1)
- **제5조(채용)** ①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 의하며 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. ②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(급호부여) ①특별채용 인력의 직급부여는 인사규정 별표2의 5급 내지 9급의 채용자격기준을 준용하며 채용자격이 5급 채용자격기준을 상회하더라도 5급을 부여한다.(개정 2010.6.1, 2015.3.31)
 - ②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기준호봉으로 부여한다.
 - ③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기준호봉에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산정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. 단,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경우 경력환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채용당시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하되 잔여금액과 일치한 호봉이 없을 경우 차상위 호봉을 부여한다.
- 제7조(승진)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6.1)
- 제8조(채용제한연령) 직원의 채용제한 연령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조(전직 및 전보제한) 조사직 직원은 타직렬로 전직할 수 없으며 공단내 타사업장으로 전보할 수 없다. 다만, 조사직렬에서 타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직원과 타직렬에서 조사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동인원간에는 전직할 수 있다.(개정 2010.6.1)
- 제10조(파견근무) ①이사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파

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신분보장) 직원의 신분보장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 평정)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표창 및 징계)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보수 및 퇴직금

제14조(지급일)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

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5조(산정기준) 직원의 보수산정기준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6.1)

제16조(계산기간)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시간외 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.

제17조(기본급) ①직원의 기본급은 보수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.

②수습 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책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.

제18조(통상임금) 직원의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6.1)

- 제19조(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)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 - ②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시기는 매월 1일자로 한다.(개정 2015.3.31)
 -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.
- 제20조(수당의 종류) ①직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6.1)
 - ② 제1항 각호의 수당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.
- **제21조(퇴직금)** ①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 균임금을 지급하다.
 - ②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.
 - ③근속년수 계산방법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및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장 복지후생

- 제22조(후생비 지급)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1. 효도휴가비
 - 2. 교통보조비

- 3. 월동보조비
- 4. 급식보조비
- ②제1항의 후생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23조(학자금 지원)** ①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자녀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: 학자금 보조 (개정 2015.3.31)
 - 2.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: 학자금 융자
 - 3. 지원한도액 : 정부고시금액 (개정 2015.3.31)
 - ②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후생규정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하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보조를 융자로 한다.
- 제24조(피복지급)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은 복지후생규정 제11조 및 피복지급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복무

- 제25조(취업시간) 직원의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6.1)
- **제26조(시간외 근무)** 직원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며, 이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7조(출장 및 공무국외여행) 직원의 출장 및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여비규정 및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하다.

제6장 보칙

제28조(타규정 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단체 협약을 준용하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6.1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사항)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제15조, 제18조, 제20조, 제25조 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5.3.3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